

지방종정법

불기 2506(1962)년 05월 31일 제정·공포
불기 2506(1962)년 12월 28일 개정·공포
불기 2509(1965)년 11월 27일 개정·공포
불기 2511(1967)년 12월 17일 개정·공포
불기 2514(1970)년 12월 16일 개정·공포
불기 2525(1981)년 04월 16일 개정
불기 2525(1981)년 05월 12일 공포
불기 2525(1981)년 09월 14일 개정
불기 2525(1981)년 09월 19일 공포
불기 2526(1982)년 06월 12일 개정
불기 2526(1982)년 06월 14일 공포
불기 2528(1984)년 09월 11일 개정
불기 2528(1984)년 09월 15일 공포
불기 2538(1994)년 10월 25일 개정
불기 2538(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39(1995)년 11월 17일 개정
불기 2539(1995)년 12월 14일 공포
불기 2553(2009)년 11월 9일 개정
불기 2553(2009)년 11월 26일 공포
불기 2555(2011)년 09월 20일 개정
불기 2555(2011)년 10월 17일 공포
불기 2556(2012)년 09월 18일 개정·공포
불기 2558(2014)년 06월 25일 개정
불기 2558(2014)년 07월 16일 공포
불기 2565(2021)년 09월 10일 개정
불기 2565(2021)년 09월 30일 공포
불기 2567(2023)년 09월 12일 개정
불기 2567(2023)년 09월 13일 공포
불기 2568(2024)년 09월 10일 개정
불기 2568(2024)년 09월 25일 공포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지방 종무기관의 종무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종무수행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방종무기관) 지방 종무기관은 본사, 말사로 한다.

제 3조 (지방종무기관의 관할) ① 각 교구본사는 중앙종무기관의 관할하에 두고, 각 단위 사찰은 교구본사 관할하에 둔다.

② 교구본사의 관할구역 및 관할 사찰은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이 정한다.

제 4조 (지방종무기관의 사무범위) 지방종무기관은 그 관할구역의 자체적 사무와 종헌 종법에 의하여 지방종무기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 5조 (서류의 경유) 사찰, 승려 또는 신도가 중앙종무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관할본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사항과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종무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의 등본을 관할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삭제[불기 2539(1995). 11. 17. 산중총회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

제2장 교구본사

제1절 본사주지

제 7조 (지위) 교구본사는 당해 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는 종무기관임과 동시에 단위사찰의 지위를 가진다.

제 8조 (본사주지) ① 교구본사의 주지는 당해 사찰의 주지임과 동시에 교구의 대표자로서 교구내 종무를 통리한다.

② 본사의 주지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승려 중에서 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불기 2556(2012) 9. 18. 개정]

③ 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9조 (본사주지의 직무대행) ① 본사 주지의 유고시 제15조에 규정된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부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국장에 우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사주지가 그 직을 가지고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된 날부터 산중총회 개회일까지 제1항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임 중인 본사주지 1인만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본사주지 직무는 유지된다.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불기2565(2021). 9. 10 개정]

제10조 (궐위시) ① 본사주지가 궐위된 때는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종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본사주지는 본사소속 종무원을 임면하고, 직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 2 절 종무회의

제12조 (종무회의) ① 교구본사에는 교구내 종무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종무회의를 둔다.

② 본사주지는 종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종무회의는 본사 주지와 부주지, 본사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사 부주지는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④ 종무회의의 사무는 본사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13조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헌, 종법 또는 종령에 의하여 교구본사에 속한 사항
2. 교구종회에 상정할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3. 교구총회에 부의할 사항
4. 교구내 본·말사의 예산안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
6. 교구행정의 기본적 계획과 각 국의 업무계획
7. 교구 또는 본·말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8. 말사주지 품신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구 총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부서

제14조 (부주지) ① 교구본사에는 부주지를 둘 수 있다.

②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하며 주지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종무기구) ① 교구의 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무국, 기획국, 교무국, 재무국, 사회국, 포교국, 호법국, 문화국을 두며 이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은 인사 및 예규문서, 회의, 직인보관,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말사 감독, 섭외, 문서, 포상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기획국은 교구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교구 사업의 총체적 기획 및 홍보, 교구 재정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기획, 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에 관한 연구, 기타 기획업무에 속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교무국은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과 법요, 의식, 승적, 승니의 행해, 수계, 도서 출납 및 보관, 기타 교무국에 속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재무국은 본사 재산관리, 말사 재산 감독, 비품관리 및 영선, 각종 부과금, 기부금, 예산안, 금품출납 기타 재정 및 경리,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사회국은 사회활동과 그 부대사업, 복지사업,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연계사업, 정보, 사회문화, 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포교국은 포교에 관한 제반 사항과 신도조직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호법국은 각급 교구 종무기관 또는 종무원의 승규에 관한 사항 기타 총무원 호법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각종 사항을 담당한다.
8. 문화국은 본사와 말사의 성보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불교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고적, 귀중품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에 과를 둘 수 있다.

제16조 (포교) ① 교구본사에는 1인 이상의 상임포교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각 본사 및 소속 사암은 연고지와 인연에 따라 포교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말사

제17조 (정의) 말사는 본종 소속 사찰중 교구본사 이외의 사찰을 말한다.

제18조 (말사 주지) ① 말사 주지는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 중에서 본사 주지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불기 2555(2011) 9. 20 본항 개정]

② 말사 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직 중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가 보장된다.

③ 말사 주지는 당해 말사의 대표자로서 말사 업무를 관장하고 말사의 재산관리권을 가지며, 소속 총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말사 주지의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본사 주지는 후임자를 품신하여야 한다.

⑤ 교구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권리자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을 신청할 수 있다.[불기2567(2023).09.12 향신설]

제19조 (과의 설치) ① 말사에는 필요한 경우 총무과, 포교과를 두어야 하며, 기타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과의 직원은 당해 주지가 임명하고 본사 주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무

제20조 (회계년도) 본·말사의 회계년도는 총무원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1조 (예산의 편성, 의결 및 확정) ① 말사 주지는 예산을 편성하여 11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구본사는 예산을 편성하여 12월 말일까지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결산) ① 말사의 주지는 회계년도 종료 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구본사는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장부의 기록 및 보존) 본·말사의 주지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지출 및 변동사항을 장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불기2565(2021)년 9월 10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불기2567(2023)년 9월 12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불기2568(2024)년 9월 10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